

##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

※어두운 난(■)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3쪽 중 1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5일
------	------	------	----

신청인	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사업자	성명	주민등록번호
	<input type="checkbox"/> 법인사업자	법인명(상호)	법인등록번호
	①주소(법인의 경우 대표 사무소 소재지)		전화번호 (유선) (휴대전화)
			전자우편

②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		③주택 구분	④주택 종류	⑤주택 유형	⑥전용 면적	⑦임차인 여부	⑧등록 이력
건물 주소	호, 실 번호 또는 층						
		[ ] 건설 [ ] 매입	[ ] 공공지원 [ ] 장기일반 [ ] 단			[ ] 있음 [ ] 없음	[ ] 최초 [ ] 양수
		[ ] 건설 [ ] 매입	[ ] 공공지원 [ ] 장기일반 [ ] 단			[ ] 있음 [ ] 없음	[ ] 최초 [ ] 양수
		[ ] 건설 [ ] 매입	[ ] 공공지원 [ ] 장기일반 [ ] 단			[ ] 있음 [ ] 없음	[ ] 최초 [ ] 양수
		[ ] 건설 [ ] 매입	[ ] 공공지원 [ ] 장기일반 [ ] 단			[ ] 있음 [ ] 없음	[ ] 최초 [ ] 양수
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  
(서명 또는 인)

신청인  
**특별자치시장  
특별자치도지사  
시장·군수·구청장**      귀하

###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

1. ①신청인의 주소란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적습니다. 임대사업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는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등록지로 자동 갱신됩니다.
2. ②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란에는 민간임대주택의 도로명주소(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만 지번주소)를 적고, 호 번호란에는 각 호·세대·실(室)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호, 실 번호 또는 층을 적습니다.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을 제외한 나머지 실만을 적을 수 있습니다.
3. ③주택구분란에는 건설임대 또는 매입임대 중 하나에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4. ④주택종류란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,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 중 하나에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5. ⑤주택유형란에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는 건축물의 용도로서 단독주택, 다가구주택,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, 오피스텔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.
6. ⑥전용면적란에는 해당 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40제곱미터 이하,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,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85제곱미터 초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.
7. ⑦임차인 여부란에는 임대차계약 중인 임차인 여부에 따라 있음 또는 없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등록 당시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 임대주택 등록일이 임대개시일이 됩니다.
8. ⑧등록이력란에는 임대사업자로부터 양수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양수에 √ 표를 하고, 그 외의 경우에는 최초에 √ 표를 합니다.
9.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3조에 따라 임대무기간에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하는 행위가 제한되며,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임대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로 제한됩니다.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임대무기간에 양도가 가능한 사유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**참고사항**
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「소득세법」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(개인사업자로 한정합니다)을 같이 하려는 경우 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자등록 신청서(개인사업자용)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,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.

- 아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시겠습니까?  
 예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 아니요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신청인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서명 또는 인)

※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6조, 제97조의3부터 제97조의5까지의 규정 등에 따른 각종 감면 또는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「소득세법」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.

**1. 사업장 현황**

업종	구분	업태	종목	업종 코드	개업일
	<input type="checkbox"/> 주 <input type="checkbox"/> 부	부동산업 및 임대업	주거용 건물 임대업(고가주택임대)	701101	
	<input type="checkbox"/> 주 <input type="checkbox"/> 부		주거용 건물 임대업(일반주택임대)	701102	
	<input type="checkbox"/> 주 <input type="checkbox"/> 부		주거용 건물 임대업(장기임대공동주택)	701103	
	<input type="checkbox"/> 주 <input type="checkbox"/> 부		주거용 건물 임대업(장기임대다가구주택)	701104	

**2. 공동사업자 명세**

출자금		원		성립일			
성명	주민등록번호	지분율	관계	성명	주민등록번호	지분율	관계

**3. 대리인 위임사항**

위 임 장	본인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. 본 인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서명 또는 인)			
대리인 인적사항	성명	주민등록번호	전화번호	신청인과의 관계

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동의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시 적은 휴대전화 전화번호로 문자(SMS) 수신에 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시 적은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
------------------------	--

### 제출서류 및 담당공무원 확인사항

<p>신청인 제출서류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4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: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</li> <li>2.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4조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: 매매계약서 사본</li> <li>3.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경우: 분양계약서 사본. 다만,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 또는 분양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</li> <li>4.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의 경우: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</li> <li>5.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4조제1항제3호나목의 경우: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증 사본</li> <li>6.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의 경우: 투자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</li> <li>7.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4조제1항제3호라목의 경우: 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</li> <li>8.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4조제1항제3호마목의 경우: 고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</li> <li>9. 등록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: 임대차계약서 사본</li> <li>10. 신청인이 법인 아닌 사단·재단인 경우: 정관, 그 밖의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</li> <li>11.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: 재외국민등록증 사본</li> </ol>
<p>담당 공무원 확인사항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개인: 주민등록표 초본</li> <li>2. 법인: 법인 등기사항증명서</li> <li>3. 재외국민: 여권정보</li> <li>4. 외국인: 「출입국관리법」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만 해당한다)</li> <li>5. 등록대상 주택이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의2의 주택인 경우: 건축물현황도</li> <li>6.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: 건물등기사항증명서</li> <li>7.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4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: 건축허가서</li> <li>8. 건축물대장</li> </ol>

###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, 제3호, 제4호 및 제7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\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(제1호, 제3호 및 제7호는 해당 서류의 사본, 제4호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「법인 아닌 사단·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」 제15조에 따른 등록증명서를 포함합니다)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### 처리절차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